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등 조치 없이 용도폐지 후 매각 등

기 관 명 광주광역시, 서구

징 계 대 상 자 ① 광주광역시 서구 ○○과 지방○○○○○ ○○
(전 서구 ○○과)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지방○○○○○)

② 광주광역시 서구 ○○○○센터 지방○○○○○ ○○○
(전 서구 ○○과 지방○○○○○)

③ 광주광역시 서구 ○○○○○센터 지방○○○○○ ○○○
(전 서구 ○○과 지방○○○○○)

내 용

지방○○○○○ ○○○은 2012. 7. 21.부터 2015. 2. 12.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3. 1. 14.부터 2015. 1. 22.까지 광주광역시 ○○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2. 7. 21.부터 2016. 1. 10.까지, 지방○○○○○ ○○○은 2013. 1. 10.부터 2014. 7. 6.까지 각각 광주광역시 서구 ○○과에서 도로의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 업무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4조 및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토지면적 330㎡ 미만 또는 재산가액 5천만원 미만의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등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시유 행정재산(도로) 용도의 폐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1. 변상금 부과 등 조치 없이 도로 점용허가 및 용도폐지(서구 ○○과)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는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제75조를 위반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행위, ○○○○청의 허가 없이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여 행정재산인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등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2014. 3. 12. ○○○○○○○○ ○○ ○○ ○○○가 광주광역시 ○구 ○○동 ○○○-○○외 1필지의 도로(시유지 234㎡, 구유지 60㎡)에 대해 점용허가를 신청⁴⁰⁾하자 같은 날 현지 출장을 다녀온 후 이미 아스콘 포장이 되어 주차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날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14. 3. 12. ~ 2016. 12. 31.) 처분을 하였다.

이후 ○○○○에서 위 점용허가 받은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2014. 6. 2. 접수)하자 같은 날 ‘용도폐지 검토 보고(○○과-00000호 및 ○○과-00000호)’를

40) ○○○○에서 제출한 도로점용사업계획서에는 ‘아스콘 포장 후 진출입로 이용’으로 기재(착수일로부터 45일)하였으나 실무담당자의 출장 복명서에 첨부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미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음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변상금 부과, 허가대장 정리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 관서에서는 이후 빠르게 공유재산 용도폐지(2014. 6. 18.),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2014. 7. 24.)을 연속으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시유지(○○동 ○○○-○○○번지, 234㎡)에 대한 관리를 위 관서(○○과)에 위임(2014. 7. 31.)하였다.

2. 매수희망 토지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대부계약 미체결(서구 ○○과)

가. 매수희망 토지를 사실과 다르게 검토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14. 8. 8. ○○○○에서 위 용도폐지된 ○○동 ○○○-○○○번지의 시유재산에 대해 매수신청을 하자 시유재산 실태조사(2014. 8. 11.)를 거쳐 ‘공유재산 매각 추진계획(○○과-00000호, 2014. 0. 00.)’ 결재를 받은 후 광주광역시에 공유재산(시유) 매각 승인을 요청(○○과-00000호, 2014. 0. 00.)하였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 추진계획과 공유재산(시유) 매각 승인 요청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실태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시유지 일부만을 경계표시를 하여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 기재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로 수의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결재를 받았다.

[그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유지 경계

공유재산 매각 추진계획 (서구 ○○과-00000호, 2014. 0. 00.)	공유재산 매각 승인 검토 보고 (광주광역시 ○○과-00000호, 2014. 0. 00.)
<p>현황 사진</p> 	<p>○ 현장사진</p> 

나. 용도폐지 후 매각 될 때까지 대부계약 미체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제2절에 따라 일반재산은 대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용도 폐지되어 관리 위임된 사유 일반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매수 신청된 사유 일반재산(○○동 ○○○-○○○○)에 대해 공유재산 용도폐지일(2014. 6. 18.)부터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일(2014. 10. 1.)까지 대부계약이나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행정수요 조사 및 일상감사 미 실시,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사항 미 이행(시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따르면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등의 일반재산의 매각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광주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은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의 이용 실태, 장래의 행정수요 여부, 인접 토지의 이용현황 등 주변 현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매각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상감사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대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서구에서 요청한 ○○동 ○○○-○○○번지의 사유지에 대한 매각을 승인하면서 장래의 행정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일상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2014. 8. 28. 공유재산 매각 승인 검토 보고를 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후 매각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재(○○과-00000호)를 받았다.

이후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서면심의)’을 수립(○○과-00000호, 2014. 0. 0.)하면서 위 토지에 대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2014. 9. 16. 공유재산심의회 서면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단순히 매각을 승인하는 것으로만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통보(○○과-00000호, 2014. 0. 00.)하였고 이후 서구에서는 ○○○○와 수의계약을 통해 시유지를 매각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 중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⁴¹⁾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징계] 위 관련자 중 지방○○○○○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41) 위 사람들 중 ○○○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행정안전부 ○○○○관-0000, 2017.9.21.)’ 및 「2016년도 징계업무 편람」(인사혁신처) 6.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 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여 함”에 따라 징계요구 대상자로 됨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 지방○○○○○ ○○○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
지·관리를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도
로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